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06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윤준병・안태준・허성무
김준혁・임호선・송옥주
김용민・김 현・박용갑
박홍배・임오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승무원 등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작 수집된 데이터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주방사선이나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 등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승무원과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과 장기 추

적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2.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적인 추적관리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 ---------- ----------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신 설>	1.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신 설>	2. 생활주변방사선 등으로 인한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의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
<신 설>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